



## 보도 자료



|      |                                                         |                               |                                              |
|------|---------------------------------------------------------|-------------------------------|----------------------------------------------|
| 보도일시 | 2022. 1. 13.(목) 조간 *인터넷 2022. 1. 12.(수) 12:00 이후 / 총 4쪽 |                               |                                              |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과 장 이부용<br>사무관 박현욱<br>사무관 권유리 | 044-202-7432<br>044-202-7466<br>044-202-7344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15.6만명의 청년 취업 지원!

- 청년의 60% 이상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는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 제공
- 하반기 집중점검을 통해 77개 기업에서 의심 사례 83건 적발, 부정수급 차단에 만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20~‘21년에 청년 15.6만명의 취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청년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 채용 여력을 높이고, 청년들의 정보기술(IT) 직무 분야 취업과 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20년 7월부터 지난해(‘21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등이 청년을 IT직무 분야에 채용 시 월 최대 19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원
- 사업 시작 이후, 지난해 말까지 4.2만개 기업을 지원하여 15.6만명의 청년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 \* 최종 지원 기업 수와 지원 청년 수는 달라질 수 있음
- 특히, 코로나19로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정규직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 채용된 청년 15.6만명 중 9.5만명(60.1%)이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전환되었고, 11.5만명(74%)이 6개월 이상 근로하는 등 청년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참여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이 줄어 채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사업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학교육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교육플랫폼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확대되어 비대면 교육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자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다수의 청년을 채용 → 청년은 모바일 IT 개발 경험을 쌓고, 기업은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에 원활히 대응
- “창업기업이나 소규모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홍보가 절실하였음.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관리, 온라인 콘텐츠 제작 인력을 채용할 수 있어 사업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함”(장려금 관계자 간담회, 11.5.)

□ 그러나, 일부 기업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면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꼭 필요한 기업과 청년이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하반기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집중점검은 ①참여기업과 청년의 사전 자율점검 참여, ②디지털 일자리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점검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

- ① 우선, 전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와 안내문을 보내 자율 개선을 유도했고,

- 인천에 있는 상품종합중개업 C사는 사업주와 4촌 이내 가족관계가 있는 甲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4회 760만원을 지원받음. 하지만, 고용부에서 배포한 부정수급 자율점검표 작성 중 위반 사실을 알게 되어 자진 신고함. 이후 고용센터는 C사를 조사하여 부정수급액 760만원을 반환받았음

- 지원 대상 청년(5천명)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점검 과정에 반영했다.

\* 의심 사례로 적발한 83건 중 18건(21.7%)이 청년의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확인

- ② 또한 정보기술(IT) 직무 한정, 상대적으로 높은 장려금 수준(월 190만원) 등 디지털일자리사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정수급의 유형(비IT직무, 허위근로 및 임금페이백 등) 등도 자세히 살펴보았다.

- 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총 2,991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7개 기업에서 83건의 부정수급·부당이득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 의심<br>사례 | 조사결과(건)  |          |      |          |    | 환수 등(백만원)    |              |               |
|----------|----------|----------|------|----------|----|--------------|--------------|---------------|
|          | 부정<br>수급 | 부당<br>이득 | 조사 중 | 수사<br>의뢰 | 기타 | 부당이득<br>반환명령 | 부정수급<br>반환명령 | 부정수급<br>제재부가금 |
| 83       | 16       | 9        | 47   | 10       | 1  | 76           | 535          | 2,567         |

- 이 중 16건은 부정수급으로 확정하여 부정수급액 5.4억원의 반환을 명령하고, 25.7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으며,
- 착오 지급 등 부당이득 9건에 대해서도 0.8억원의 반환명령을 했다.

| 계  | 허위<br>근로 | 임금<br>페이백 | 친인척 | 근로계약서<br>허위작성 | 채용일<br>허위신고 | 비IT<br>업무 | 동일사업주<br>재고용 |
|----|----------|-----------|-----|---------------|-------------|-----------|--------------|
| 16 | 6        | 2         | 3   | 2             | 1           | 1         | 1            |

- 부산에 위치한 공연기획업 D사는 청년 1명(乙)을 대상으로 디지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4회차 760만원을 지급받음. 조사 결과, D사는 乙이 1일 4시간 근무하였음에도 지원금을 지원한도까지 받을 목적으로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됨. 고용센터는 D사에 대해 부정수급액 760만원 반환명령, 3,800만원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함

- 나머지 57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 제재부가금 부과 및 필요시 형사고발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명령액과 제재부가금은 달라질 수 있음

- 고용노동부 권창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이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일하고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하면서,

- “정부 지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하게 수령한 사례가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엄정히 조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지원금이 올해까지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도 부정수급 집중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 신규 신청은 '21년에 마감, '22년에는 잔여 지원금 지급 ⇒ '21.12월 채용된 청년은 최대 '22.8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부정수급 정황을 알게 된 누구나 ‘부정수급 상시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신고센터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신고

- 한편,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21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올해는 ‘21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한 잔여 지원만 이루어지며,

- ‘22년에 새로 채용된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1.20. 시행 예정(잠정)]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그 기업에게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최대 960만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박현욱 사무관(☎044-202-7466, 부정수급 담당), 권유리 사무관(☎044-202-7344, 디지털일자리사업 담당)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2



# 보도자료



|      |                                                        |                               |                                              |
|------|--------------------------------------------------------|-------------------------------|----------------------------------------------|
| 보도일시 | 2022. 1. 10.(월) 조간 *인터넷 2022. 1. 9.(일) 12:00 이후 / 총 7쪽 |                               |                                              |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과 장 이민재<br>서기관 김경민<br>주무관 이정준 | 044-202-7553<br>044-202-7528<br>044-202-7538 |
|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과 장 김동현<br>사무관 정장석            | 044-202-7554<br>044-202-7563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고용노동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 집중지도기간 운영(1.10.~1.30.) 및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실시
  - 고액·집단체불 현장에 기관장 직접 지도 및 체불청산기동반 출동
-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 체불예방 집중지도
- 생계안정을 위해 설 전에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용자 금리 인하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①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10.(월)부터 30.(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 ②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점검하고 집중 관리한다.

- 관계부처에 소관 공공기관의 체불 자체 점검을 요청하고, 체불 발생 시 고용부로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며,
  - 전체 공공기관 및 주요 건설사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과 임금체불 예방을 당부하였다.
  - 특히, 공공건설 현장 500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
-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 ③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1.3.~1.28.)
-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 \* ▲(이자율 인하) 연 1.5% → **1.0%** <기간: 1.3~2.28, '21년 설 대비 1개월 → **2개월로 확대**>  
▲(한도) 1인당 1천만 원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은 2천만 원)

-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용자 이자율을 1.0%p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 \* ▲(이자율 인하) 담보 2.2% → **1.2%**, 신용·연대보증 3.7% → **2.7%**  
<기간: 1.3~2.28, '21년 설 대비 약 1개월 → **2개월로 확대**>

- ▲(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증액: 사업주당 7천만원 → 1억원, 근로자 1인당 600만원 → 1천만원>

- 한편, '21년 11월까지 임금체불 발생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고,

- 청산율은 83.3%로 증가\*(청산액 1조 278억원)하여 남아 있는 체불액(미청산액)은 2,05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감소했다.

\* 청산율: ('18년) 64.8% → ('19년) 70.3% → ('20년) 79.3% → ('21년 11월) 83.3%

- 안경덕 장관은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에게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을 청산할 것을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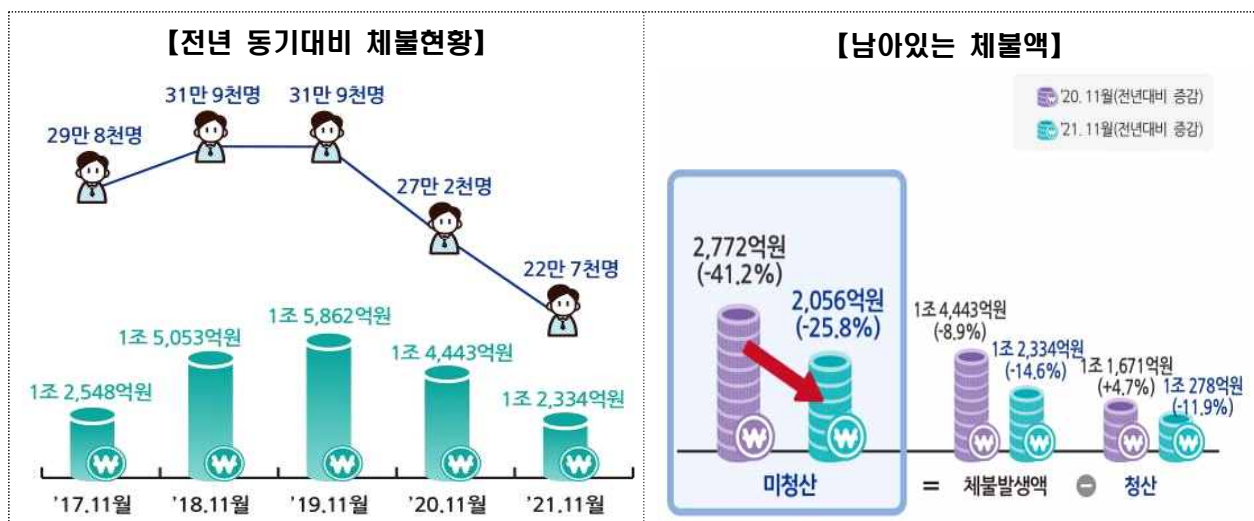
- 또한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                                                                                                                                                      |
|------------------------------------------------------------------------------------------------------------------------------------------------------------------------------------------------------------------------------------------------------------------------------------------------------------------------------------------------------------------------------------------------------------------|------------------------------------------------------------------------------------------------------------------------------------------------------|
|  <div>    </div> <div>       공공누리<b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div> |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김경민 서기관(집중지도기간 운영, 임금체불 ☎044-202-7538),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대지급금, 용자 ☎044-202-756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p> |
|------------------------------------------------------------------------------------------------------------------------------------------------------------------------------------------------------------------------------------------------------------------------------------------------------------------------------------------------------------------------------------------------------------------|------------------------------------------------------------------------------------------------------------------------------------------------------|

## 참고 1

## 임금체불 현황 ('21년 11월 말 기준)

- '21년(11월 말 기준) 발생한 임금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는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체불액은 1조 2,3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  
체불 근로자는 226,5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 근로감독관 지도해결률 상승\*,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체불 청산율이 상승하고, 남아있는 체불액과 체불 근로자도 전년 대비 모두 감소
  - \* 연도별 지도해결률: ('19.11월) 47.5% → ('20.11월) 52.6% → ('21.11월) 54.1%
- 체불임금 청산율은 83.3%(1조 278억원/1조 2,334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2.5%p 상승
  - \* 청산 = (지도해결+체당금+무료법률구조지원) - (지도해결과 체당금 중복)
  - \*\* 연도별 청산율: ('19.11월) 70.3% → ('20.11월) 80.8% → ('21.11월) 83.3%
- 남아있는 체불액은 2,05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감소  
남아있는 체불근로자는 3,4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2% 감소



**□ 제도 개요**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 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 참고 3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 □ 제도 개요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용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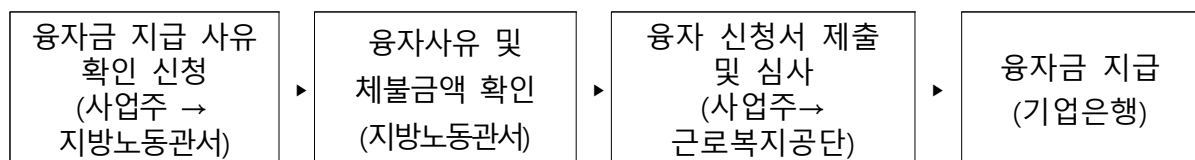
#### □ 지원 요건

| 구분        | 지원 요건                                                                                                                                                          |
|-----------|----------------------------------------------------------------------------------------------------------------------------------------------------------------|
| 사업주<br>요건 | ①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 (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br>②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br>③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br>* 다만,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용자 제외 |
| 근로자<br>요건 | ○ (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br>○ (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용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 □ 용자 조건

| 구분   | 용자 조건                                                                |
|------|----------------------------------------------------------------------|
| 용자금액 | ○ 사업주당 1억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만원 한도)<br>* 용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
| 이자율  | ○ 담보 연 2.2%, 신용 연 3.7%                                               |
| 상환방법 | ○ 1년 거치 2년 분기별 균등상환<br>*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 □ 사업추진체계



## 참고 4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 □ 제도 개요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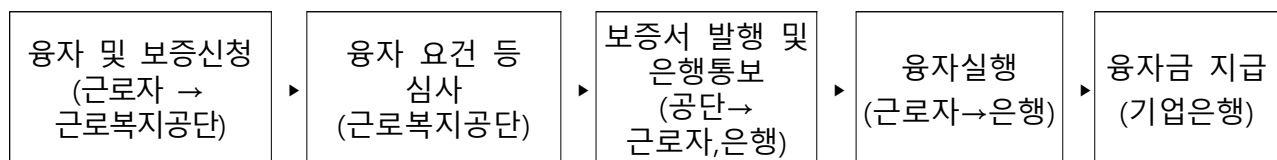
### □ 지원 요건

| 구분        | 지원 요건                                                                                                                                                                                                                                                                    |
|-----------|--------------------------------------------------------------------------------------------------------------------------------------------------------------------------------------------------------------------------------------------------------------------------|
| 근로자<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li> <li>○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li> </ul> </li> </ul> |
| 체불<br>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1년 694,945원) 금액 이상이 체불</li> </ul> </li> </ul>                                        |

### □ 융자 조건

| 구분   | 융자 조건                                                                                                                                                                                                                                                                                        |
|------|----------------------------------------------------------------------------------------------------------------------------------------------------------------------------------------------------------------------------------------------------------------------------------------------|
| 융자금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li> </ul> </li> <li>○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li> </ul> |
| 이자율  | ○ 연 1.5% (신용보증료 1% 별도)                                                                                                                                                                                                                                                                       |
| 상환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li> </ul> </li> </ul>                                                                  |

### □ 사업추진체계



## 보도자료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휴먼뉴딜

한국판뉴딜

|                                                                                                  |                            |                                       |                                                 |
|--------------------------------------------------------------------------------------------------|----------------------------|---------------------------------------|-------------------------------------------------|
| <div> <div>보도일시</div> <div>2022. 1. 11.(화) 조간 *인터넷 2022. 1. 10.(월) 13:30 이후 / 총 11쪽</div> </div> |                            |                                       |                                                 |
| <div> <div>담당부서</div> </div>                                                                     | <div>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div> | <div>과 장 손필훈</div> <div>서기관 최재윤</div> | <div>044-202-8804</div> <div>044-202-8811</div> |
|                                                                                                  | <div>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div> | <div>과 장 양현수</div> <div>사무관 박득영</div> | <div>044-202-8901</div> <div>044-202-8903</div> |
|                                                                                                  | <div>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div> | <div>과 장 강검윤</div> <div>서기관 박신원</div> | <div>044-202-8950</div> <div>044-202-8951</div> |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 정부는 1월 10일(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른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산업안전보건본부장 브리핑)

2. '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최재윤 서기관(☎ 044-202-88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산재 사망사고 현황

- 그동안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 현장에서도 ‘안전관리 없이 작업도 없다’는  
안전 우선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 ‘21년 산재 사고사망자(산재승인 기준 공식통계)는 828명으로  
‘20년 882명 대비 54명이 감소(△6.1%)했고, 사고사망만인율도 0.43‰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9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 \* 사고사망자(만인율): (‘16) 969(0.53) → (‘17) 964(0.52) → (‘18) 971(0.51) → (‘19) 855(0.46) → (‘20) 882(0.46)
- \*\* 업종별(‘21.): [건설] △41명(458 → 417명 [제조] △17명(201 → 184명), [기타] +4명(223 → 227명)
- 사망사고 발생 기준\*(조사통계)으로는  
‘20년에 비해 101명이 감소(768 → 667명, △13.2%)했고,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한다면 올해는 700명 초반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 중대재해 중 근로감독관이 조사대상으로 집계한 업무상 사고사망자 수로 평균 4개월 후  
공식통계(산재승인)에 반영 → ‘21.6월부터 전년대비 대폭 감소 추세(6월~12월, △116명)
- 우리 사회의 안전한 일터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은 만큼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더욱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1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사망사고) 사업장: **190개소**(건설 109, 제조 43, 기타 38)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 우선,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21.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1.11월), 업종별 자율점검표\*('21.9월~), 사고유형별 매뉴얼\*\*('21.4월~) 등을 현장 수요에 맞게 지속 제작·배포하고, 문의가 잦은 사항은 별도 FAQ를 마련해 금주 중 배포하겠습니다.

\* ▲('21.9월) 중소제조업 ▲('21.11월) 폐기물처리업, 창고·운수업  
▲('21.12월) 건설업 ▲('22.1월) 도·소매업, 음식점업, 임업, 화학업

\*\* 지붕공사('21.4월, 11월), 달비계('21.10월), 벌목('21.11월), 사다리·천막공사·폐기물처리('21.12월)

-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현장에 정착되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보급(1월말) 하겠습니다.

- 그간 정부가 제공한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등을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 작년부터 운영 중인 안전관리 현장지원단(400여개소 지원)에 이어 올해는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50~299인, 3.5천개소)에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 ▲제조·기타업종 등 2천개소: 민간 전문기관 ▲건설·화학업종 등 1.5천개소: 안전공단

- 특히, 50억 이상 건설현장을 시공하는 건설업체(1,700여개)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해 우선 자율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중소·중견 건설사(시공순위 201위 이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하겠습니다.

- 1월 12일, '22년 제1차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에 맞춰, 중대재해처벌법 리플렛 및 '21년 사고사례집 등도 현장에 배포하겠습니다.

- 1월 중,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에 대한 신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동영상 강의도 업로드\*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 등

- 중대재해처벌법은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도 예외가 없는 만큼 공공부문도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우리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전담조직 설치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안내\*했습니다.

\* 75개 중앙행정기관 및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배포('21.12.27.)

- 지자체가 수행·발주사업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산재예방 매뉴얼\*'을 배포(12월말)했으며,

\* 주요 내용: ① 지자체 발주사업 등 안전관리 방안, ② 관내 사업장의 산재예방을 위한 지자체 활동, ③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사항 등

- 금년도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협업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추가했습니다.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겠습니다.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2.1.4.)에 따라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산업재해관리과(7개)에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여부와 함께,

-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요인이 목인 및 방치되었는지 여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 검찰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법적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고,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절차를 표준화하겠습니다.

\* 대검찰청 내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대응 TF」('21.3월~)와 상시 협조 추진

- 모의수사 사례 등을 포함하여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독관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작년 12월에 전용 누리집(koshasafety.co.kr)을 개설·운영 중이며, 계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제 때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보도자료, Q&A, 홍보자료, 영상교육자료 등

##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우선, 사망사고 다발 업종(건설, 제조, 화학 등) 및 현장 위험요인 중심으로 예방 감독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건설업 중소현장(1억 ~ 50억미만)은 패트론편점을 통한 불량 현장 선별 후 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초소규모 현장(1억미만)은 지붕공사, 달비계 등 위험작업\*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 (지붕공사) 봄(3월), 가을(9월)에 공사유형별(공장, 건축공사, 축사, 태양광) 관련기관 협조 (달비계) 5,9월 위험경보 발령, 공동주택 외벽 도색·청소작업 현장점검, 원격교육 등

- 제조업은 고위험(끼임 등) 기계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점검표 배포·회수, 사고사례 수시전파 등을 통해 밀착관리하고, 자율점검 및 패트롤점검 결과 불량 사업장\* 위주로 감독하겠습니다.

\* (20~50인) 자율점검표 미회신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미선임 사업장 감독 대상 우선 선정  
(5~20인) 기술지도 및 패트롤점검 결과 미시정 등 불량 사업장 감독 연계

- 감독결과는 반드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설명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형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3대 석유화학산단(여수·울산·대산) 정비 보수 기간 중 전체 작업안전 과정을 모니터링 하고, 공정안전관리(PSM) 비대상 공정까지 위험경보제\*를 확대하겠습니다.

\*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화기·밀폐공간·독성물질취급 작업 등을 긴급하게 실시하는 경우, 지방관서(중방센터)와 안전공단에 통보 시 적시 기술지도 실시

- 화재·폭발에 취약한 물류창고 등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가연물(보온재, 신나 등) 화재예방 조치 여부 확인·점검 및 사업주 대상으로 사고사례 전파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매월 3대 기본 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을 운영하여

\*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 적발된 취약요인을 미 시정한 불량 사업장(현장)은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연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3대 안전수칙 만큼은 반드시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1조 1천억원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산재예방 사업 예산: ('19) 3,644억원 → ('20) 5,134억원 → ('21) 9,770억원 → ('22) 1조 921억원

- 추락·끼임 등 재래형 사고 예방에 효과성이 입증된 클린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 시스템 비계 뿐 아니라, 사다리형 작업발판, 채광창 안전덮개 등까지 ‘유해·위험시설 개선비용 지원’(‘22. 1,197억원)을 확대하고,
- 뿌리산업 등 6개 제조업의 노후·위험 공정 개선과 이동식크레인, 프레스 등 9개 위험기계·기구의 교체 비용을 안전투자혁신사업(‘22. 3,271억원)을 통해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 노후위험공장: (‘21) 뿌리산업 3대 공정 → (‘22) 기계기구, 화학고무 수제품제조등 3개 공정 추가  
▲ 위험기계기구: (‘21) 이동식크레인 등 3종 → (‘22) 프레스, 컨베이어, 롤러기 등 6종 추가

- ‘24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에 산재보험료를 감면(3년간, 20%)하고,

\*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재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조치를 실시(산안법 제36조)

-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강디딤돌\* 사업(‘22. 565억원) 지원 대상을 올해는 3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년까지는 50인 미만으로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21.) 작업환경 5만개소, 특수건강 35만명 → (‘22. 목표) 작업환경 7.4만개소, 특수건강 53만명

- 아울러, 소규모 현장(건설 1억미만, 제조 50인미만)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착되도록 기술지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21년 361억원) 사고 핵심위험요인 점검 및 산재예방 관련 자료 교부 등 → (‘22년 450억원) 안전보건관리체계 기본요소 컨설팅,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등 추가 확대

□ 현장 중심 산재예방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현장 실천안전수칙\*’과 ‘작업 전 10분 점검’ 등을 핵심메시지로 하여 노동자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수칙 준수가 생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예시) ❶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실시  
❷ 위험기계장비 보수·정비 전 반드시 운전 정지  
❸ 덤프트럭 등 차량기계 작업 시 작업지휘자 배치

###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된 급성중독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고용부, 안전공단, 보건전문기관 등 포함)으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3월부터 6개 권역(서울·중부·충청·전라·경북·경남)별 '직업병 모니터링 센터' 설치·운영 추진

- 이를 통해, 직업병 의심 사례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신속히 개입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 직업성 질병 중대산업재해 수사 시 전문적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노동자가 일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오는 8월 18일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미설치: 15백만원, 기준 미준수: 10백만원)
-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합리적 수준에서 세부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조선업계 무용제도로 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 교사 육종암 등 건강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강진단 명령, 사용 중단 및 시설개선,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기준 마련 및 교육청·교육부 지도

(무용제도로)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무용제도로 사용으로 피부질환 발생

→ 임시건강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지도, 사측에 무용제도로 사용중단 개선안 마련 요구

(3D프린터) 과기부 주관 범부처 합동대책 마련 → 추가대책 논의 및 집단역학조사 실시 검토

#### 〈4〉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선, 중앙 단위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sup>가칭</sup>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 \* 중장기 산재예방대책 수립 및 주요 산업안전보건 정책 심의,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실태조사,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 등 논의
- 지역에서는 지역별 안전보건협의체\*를 운영하여 정보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지역별 산재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발주공사\*\* 등에 대한 합동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 광역 단위로 고용부(지방고용노동관서), 지자체, 안전공단,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업 체계
  - \*\* '21년 지자체 발주공사 사망사고는 46명('20년 45명)으로 전체 건설업 사망사고의 10% 수준
- 지자체 내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1차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sup>가칭</sup> 산업안전지도관’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 \* 지자체 공무원에게 소규모 건설현장 출입·지도 권한 및 불량사업장 고용부 통보 의무 부여

#### 노·사에 대한 요청과 마무리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지난 1년간 법 시행을 준비하며 정부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처벌 회피보다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하고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 첫째, 안전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안전경영의 목표를 소속 노동자, 종사자에게 알리고 공유해야 합니다.

- 둘째, 사고의 발생,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 노동자와 함께 사업장 내, 작업과정의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셋째, 개선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예산을 투입하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사고 감축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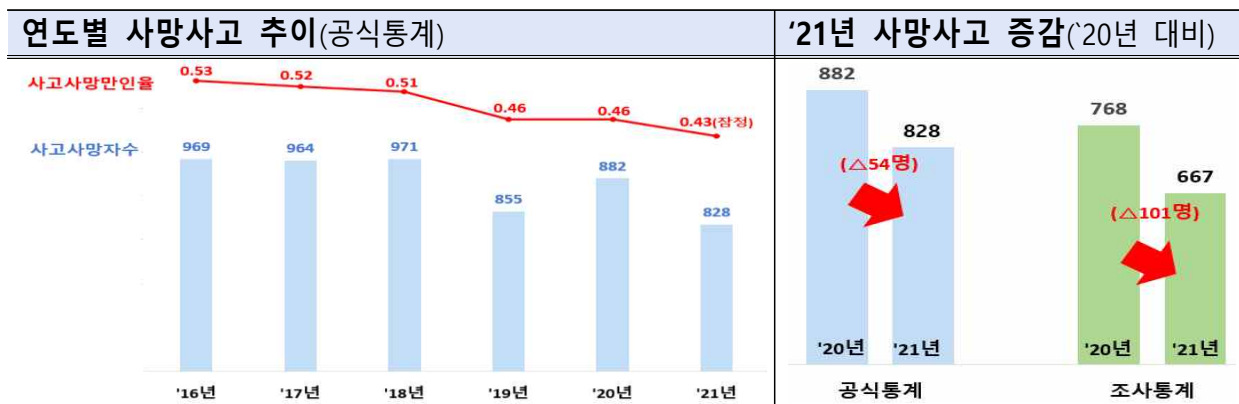
- 기업은 ❶ 안전에 대한 무관심, ❷ 위험의 방치, ❸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목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 노동자는 ‘작업 전 안전미팅’ 등을 통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작업에 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정부는 올해도 안전 의식과 관행의 변화,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총괄

- **(사망사고 공식통계)** '17~'18년 900명 중·후반대에서 '19년 855명 → '20년 882명으로 감소\*, '21년은 전년대비 **54명 감소\*\*** (882 → 828명)
  - \* 사고사망자(만인율): ('16) 969(0.53) → ('17) 964(0.52) → ('18) 971(0.51) → ('19) 855(0.46) → ('20) 882(0.46)
  - \*\* 건설업: △41명(458 → 417명), 제조업: △17명(201 → 184명), 기타업종: +4명(223 → 227명)
- 사고사망만인율은 0.5 초중반에서 '19년 0.4대로 진입, 감소 추세 지속
- **(사망사고 발생현황)** 올해 6월 이후 발생 기준 조사통계 감소 추세 지속 → '21년은 전년대비 **101명 감소** (768 → 667명)



□ 세부 현황

- **(업종·유형별)** 건설업에서 절반 이상 발생\*, 필수보호구 착용으로 예방 가능한 추락·끼임의 재래형 사고\*\*가 절반 차지
  - \* 건설업 비중(%): ('16) 51.5 → ('17) 52.5 → ('18) 49.9 → ('19) 50.1 → ('20) 51.9 → ('21) 50.3
  - \*\* 추락+끼임(%): ('16) 48.3 → ('17) 48.5 → ('18) 50.4 → ('19) 53.0 → ('20) 48.3 → ('21) 53.9
- **(규모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사고의 대부분 발생
  - \* 건설 50억 미만(%): ('16) 65.3 → ('17) 66.2 → ('18) 66.6 → ('19) 66.1 → ('20) 72.3 → ('21) 71.5
  - 제조업 등 50인 미만(%): ('16) 73.2 → ('17) 76.2 → ('18) 77.6 → ('19) 82.2 → ('20) 80.9 → ('21) 78.6

⇒ **21년 산재 사망사고 828명**, 사고사망만인율 0.43‰으로 사망사고 통계 작성이 시작된 '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

⇒ 사망사고 발생\*(조사통계) 추이 등 감안, 내년에도 감소 추세 지속 전망

\* '21. 6월부터 조사통계 기준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대폭 감소(6월~12월말: 493 → 377명, △116명)